

공 시 송 달 공 고

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(독촉)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· 이사감 ·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

-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(독촉)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
2. 공고대상 : 2019년 9월 분 반송분

(세부명단 : “붙임” 참고)

3. 공고기간 : '19. 9. 17. ~ '19. 10. 2. (16일간)

4. 기 타

가.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나.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**3%의 가산금**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**1.2%의 증가산금**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
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

5. 문 의 처 : 홍천군청 도시과 교통행정담당(☎033-430-2945)

2019년 9월 17일

홍 천 군

